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55621(본소), 2013다55638(반소) 판결

[구상금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55621(본소), 2013다55638(반소)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6. 25 선고 2012나4112(본소), 2013나1097(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1가합423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1.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경남기업주식회사의 관리인 C

2.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D

판결 선고 2016. 3. 24.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6. 25. 선고 2012나4112(본소), 2013나1097(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732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대한주택공사는 천안시 백석동 890 백석 그린빌 주공 2차아파트 10개동 75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실, ② 원고는 2002. 6. 14.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과 이 사건 아파트 중 3공구에 해당하는 203 내지 208동 총 6개동(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시공을 완료하자 2004. 7. 1.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 수분양자들을 입주시킨 사실, ④ 이 사건 제1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등에 부실시공 등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수회 하자보수를 하였음에도 하자가 계속 남아 있자, 이 사건 아파트 750세대 중 97%에 해당하는 728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에서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1,309,554,69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16.부터, 나머지 309,554,690원에 대하여는 2008. 6. 12.부터 각 2009. 6. 30.까지는 연 5%의, 200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 ⑤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9. 7. 7. 1,457,847,364원(= 원금 1,309,554,690원 + 2009. 7. 7.까지의 지연손해금 148,292,674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지연손해금은 원고 스스로의 이행지체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그와 별개로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피고들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지연손해금은 피고들의 위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